

국 민 안 전 처

훈계 · 주의 요구

제 목 제설장비 임차 분할계약 및 관리 감독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, 정선군

관 련 자 정선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사무소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11. 1.부터 2015. 12. 31까지 ○○군 ○○읍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

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, 물자 및 자재를 비축·관리하여야 하며,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·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강원도 ○○○○사업소(○○지소, ○○지소, ○○지소, ○○지소)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「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계획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.

1. 설해대책을 위한 덤프트럭 등의 임차 시 분할계약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3조¹⁰⁴⁾는 긴급한

재해 복구계약 또는 임차·운송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과, 제25조¹⁰⁵⁾는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

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

같은 법 시행령 제79조¹⁰⁶⁾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‘임차’를 규정하고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제1절 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·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럼에도 강원도 도로○○○○사업소(○○지소, ○○지소, ○○지소, ○○지소))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설장비 임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 내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는 사유로,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체결이나 회계연도 시작 前 또는 예산배정전의 계약체결이 아닌 기간을 임의로 1개월 또는 회계연도 개시 전·후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.

104) 제23조(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·운송·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05) 제25조(단가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·구매·수리·보수·복구·가공·매매·공급·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(單價)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·절차·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06) 제79조(단가계약)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물품의 제조·구매·수리·가공 2. 시설물의 보수·복구 3. 전기·가스·수도의 공급 4. 그 밖에 공급·사용·임차·매매 등의 계약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,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,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2. 제설차량 운행의 형식적인 관리감독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와 제17조, 「(계약예규)용역계약일반조건」 제12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용역사업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, ‘○○지소’와 ‘정선군 ○○읍사무소’는 2015년 제설장비 임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‘○○○○○○(000-00-00000, 대표 ○○○)’라는 동일업체와 아래와 같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설차량 운행시 관리자의 직접 또는 유선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, ‘제설차량 운행일지’ 등을 작업시 마다 작성하여 작업 내용에 대하여 확인(검수·검사)를 받도록 하였다.

[표] 2015년 ‘○○지소’와 ‘○○읍사무소’ 제설장비 임차 현황(○○○○○○○)

구분	계약기간	계약조건	계약금액	비고
○○지소	2015.12.1.~12.31.	월 계약	5,656,400원	상시대기
○○읍	2015.11.25.~12.31.	최소기간(3일) 초과시 일수	1,815,000원	상시대기

* 자료 : 강원도 ○○○○국 ○○○○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

그러나, 2015년 12월 2일 정선군 ‘○○읍사무소’에서는 제설 작업 시 ‘○○○○○○’에 제설작업을 지시하였으나 ‘운행일지’에는 3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작업 지시일자와 근무일자가 상이하며 또한, 실제 근무자가 ‘○○○’가 아닌 ‘○○○’이 근무 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.

또한, 동월 21일 제설 작업 시에도 ‘○○○○○○’의 작업자 ‘○○○’은 실제 ○○지소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‘○○읍 사무소’에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한 것으로 ‘운행일지’가 중복 작성되어 있음에도

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선군 ‘○○읍사무소’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검수·검사를 승인해 주는 등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 및 관리업무를 형식적으로

처리하였다.

[표] 제설작업시 형식적인 관리감독 내역

일자	내 용	내 용	비고
2015.12.3.	근무일 및 근무자 상이	실제 근무 2015. 12. 2	
2015.12.21.	근무자 상이	실제근무지 ○○지소	

* 자료 : 강원도 ○○○○국 ○○○○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, 정선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교육 등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